

「평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김광성 의원
- 제안일자 : 2025. 11. 10.
- 회부일자 : 2025. 11. 18.
- 상정일자 : 2025. 11. 25.

2. 제안이유

-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평창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시책 개발·발굴 노력의 준수 책무(안 제3조)
- 지원사업 및 위탁근거(안 제4조)
- 사업추진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사업비 지원(안 제5조)
- 관련 기관·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사회복지사업”의 정의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어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사업은 복지사업으로 볼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 주민의 복지 증진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

나. 입법의 취지

-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 정착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및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3조(군수의 책무)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 정착을 위한 시책 개발·보급 등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지원 사업)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위탁의 근거를 마련함.
- 안 제5조(재정 지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안 제6조(협력체계 구축)에서 보호관찰소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

5.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평창군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원활하게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조화로운 지역사회를 형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취지는 타당하고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국민의 협력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 저. (생략)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 허. (생략)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 차. (생략)

3. ~ 7. (생략)